

#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001~27
----------	---------

제출연월일 : 2001. 7.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근거 및 신설되는 건설폐기물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및 수수료 기준 마련하고,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기준” 신설에 따른, 전용수거용기 사용자에게 대하여 수수료 부과·징수 근거 마련키 위함.

## 주요골자

-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8조의2)
- 건설폐기물매립장 처리 수수료 기준 신설(안 제21조)
-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조항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21조)
-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전면 개정(별표 7)

## 개정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 공사장 생활폐기물처리관련 지방자치단체 조치 필요사항(경상남도환경67510-10774)
-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규정(환경부예규 제201호, 2000.2.25)

# 거창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다음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8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①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이하“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고, 배출자가 운반할 수 있다.

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처리할 수 있으며, 자가 운반하는 경우, 배출자는 사전에 그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중 제3호다음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수수료 월간평균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을 “수수료는 수거운반”으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를 “수수료는 별표5의3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로 한다.

4. 건설폐기물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5의2와 같다.

제24조중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2] “건설폐기물매립장 처리 수수료”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3]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기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5의2]

건설폐기물매립장 처리 수수료(제21조 제1항 관련)

대 상	기준	처리 수수료(원)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폐블럭, 폐기와)	톤당	15,000	-	15,000

※ 상기 대상 품목외에는 건설폐기물 매립장에 반입할 수 없다.

[별표5의3]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기준(제21조 제3항 관련)

수집방법	구 분	수 수 료
전용봉투 사용 (3ℓ)	전용수거용기 보급외의 지역(단독주택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과 동일함
전용수거용기 사용 (공동주택)	평수 무관	세대당 600원/월
감량의무사업장	기업체, 음식점, 학교 등	30원/kg

- 부과방법 : 매월 수집·운반·처리후 익월 15일까지 납부자에게 부과한다.
- 미납자 조치 : 특별한 이유없이 2개월 이상의 수수료를 미납할 경우 전용수거용기를 회수하고, 납부시까지 수집·운반하지 않는다.
  - 지방세법에 의한 미납자 조치와 병행 실시한다.

[별표 7]

과태료부과기준(제24조 관련)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폐기물 관리법	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법 제12조)			
	가.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배출된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혼합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	300	500	700
	(2) 적정처리·보관장소외의 곳으로 운반하는 경우	500	700	1,000
	(3) 운반차량을 도색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명, 회사명 등을 규정대로 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300	500
	(4) 폐기물수집·운반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700
	(5)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아니하는 경우(덮개를 설치하여야하는 차량에 한한다)	300	500	700
	(6) 폐기물을 흘날리거나 누출 또는 침출수를 유출시키는 경우	300	500	700
	(7) 전용의 용기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운반하는 경우	300	500	700
	(8) 기타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500	700	1,000
	(9)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아니하고 운반하는 경우	200	300	500
	(10) 기타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50이하	70이하	100이하
	(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200이상 300이하	300이상 500이하	500이상 700이하
	(다)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이상 400이하	400이상 600이하	600이상 1,000이하
나.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보관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가) 1일이상 1월미만 경과시	200	400	600	
(나) 1월이상 3월미만 경과시	400	600	800	
(다) 3월이상 경과시	1,000	1,000	1,000	
(2)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10이하	20이하	30	
(나)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100	200	300	
(다) (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라)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3)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10이하	20이하	30
	(나)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100	200	300
	(다) (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라)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1,000
	(4) 건설공사 완료후 건설 현장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건설폐기물의 경우에 한한다)			
	(가) 보관량이 15톤(10 <sup>m³</sup> )미만인 경우	100	200	300
	(나) 보관량이 15톤(10 <sup>m³</sup> )이상 75톤(50 <sup>m³</sup> )미만인 경우	200	400	600
	(다) 보관량이 75톤(50 <sup>m³</sup> )이상인 경우	500	700	1,000
	(5)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표지판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100	200	300
	(6)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200	300
	(7) 기타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50이하	70이하	100이하
	(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 폐기물을 제외한다)	200이상 300이하	300이상 500이하	500이상 700이하
	(다) 지정 폐기물의 경우	200이상 400이하	400이상 600이하	600이상 1,000이하
	다.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매립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500이하	700	1,000
	(2) 소각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400이하	600	800
	(3) 재활용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이하	600	800
	(나)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700
	(다)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 제6호다목(2)(나)④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4) 기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 지정 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500이하	700	1,000
	(나) 지정 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2. 폐기물정산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법 제25조의7제1항 또는 제3항)			
	가.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700
	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500	700	1,000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3. 목록형 대장을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25조의9 제2항)	300	500	700
	4.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6조제8항)			
	가.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300	500	700
	나. 위탁계약서의 작성·체결 및 보관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1)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700	1,000	1,000
	(2) 운반단가(운반비)·처리단가(처리비) 또는 운반·처리장소의 내용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500	700	1,000
	(3) 운반단가(운반비) 및 처리단가(처리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하는 경우(배출자,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계약 체결하거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외에 처리까지 계약 체결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500	700	1,000
	(4) (2)의 내용외의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300	500	700
	(5) 위탁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다.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작성대상인 경우에 그 내용을 위탁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라.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로서 그 처리비를 기일내에 사후정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700	1,000	1,000
	마.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하는 경우 (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을 재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700	1,000	1,000
	바.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보관범위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1) 보관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 3일미만 초과시	300	500	700
	(나) 3일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2) 보관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 150톤(100m <sup>3</sup> ) 미만 초과시	300	500	700
	(나) 150톤(100m <sup>3</sup> ) 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3) 보관장소가 동일 시·도에 2개소 이상인 경우	1,000	1,000	1,000
	사. 수집·운반 및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위탁을 받는 경우			
	(1) 50퍼센트 미만 초과시	300	500	700
	(2) 50퍼센트 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아. 인수받은 폐기물을 30일(감염성폐기물은 7일) 이내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자.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00이상 300이하	300이상 500이하	500이상 1,000이하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5.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거나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가. 중간처리시설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 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500	1,000
	(2)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500	1,000
	(3) 바닥재가 감열감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0	500	600
	(4)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00이상 300이하	300이상 500이하	500이상 1,000이하
	나. 가목외의 중간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00이상 300이하	300이상 500이하	500이상 1,000이하
	다.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 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700	1,000	1,000
	(2) 복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복토하는 경우	400	600	1,000
	(3)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300이상 500이하	500이상 700이하	700이상 1,000이하
	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소각시설의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	1,000	1,000
	(2) 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대상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1,000
	6.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한 자(법 제39조제1항)	300	500	1,000
	7.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공제조합(법 제43조의2 제3항제1호)	1,000이하	1,000	1,000
	8.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법 제25조제4항 또는 제25조의2)			
	가.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300	300
	나.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1)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300	300
	(2) 내용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200	300
	(3) 빈칸이 없도록 완전하게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300	300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법 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	100	200	300
	10.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지정폐기물 운반자(법 제25조의2제3항)	300	300	300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11. 위탁받은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배출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처리자(법 제25조의2 제4항)	100	200	300
	12.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법 제25조의9제1항)	300	300	300
	13.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법 제42조)			
	가.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300	300	300
	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경우	100	200	300
	14.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별도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5	5	5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무단소각 행위	10이상 20이하	10이상 20이하	10이상 20이하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10이상 20이하	10이상 20이하	10이상 20이하
	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이상 50이하	20이상 50이하	20이상 50이하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및 동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한다)	50이상 100이하	50이상 100이하	50이상 100이하
	15.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법 제7조제3항)	30이하	70	100
	16. 거창군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가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감량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10이하	20이하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이하	30이하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라. 음식물쓰레기를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5	10	20
	마.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경우	10이하	20이하	30이하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17.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12조)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20	50	100
	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30
	18.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2조)	100	300	500
	19. 감시전문기관에 감시위탁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법 제25조의5제1항)	100	100	100
	20.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제4항)	100	100	100
	21.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담당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경우	30	40	50
	나. “가”이외의 교육대상자	30	40	50
	21의2.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41조)	100	100	100
	22.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법 제43조제1항)	30	50	100
	23.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43조)	100	100	100
	24.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7조제1항)	100	100	100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1.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 13조제2항)			
	가.재활용지정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250	300
	나.제1종지정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250	300
	다.제2종지정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0	200	300
	라.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0	200	300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300	300	300
	3. 제품의포장방법및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가.포장공간비율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기준보다 25%미만 초과한 때	200	300	300
	(2)기준보다 25%이상 초과한 때	300	300	300
	나.포장횟수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기준보다 1회를 더 포장한 때	200	300	300
	(2)기준보다 2회이상 더 포장한 때	300	300	300
	다.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칩합(라미네이션)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라.완구, 인형 또는 종합제품의 포장에 발포폴리스틸렌계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p>마.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율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바.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용적 3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 감량화를 위한 자체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사.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용적 3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 감량화기준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아.가전제품 제조자 등이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를 감량화한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계획의 미제출에 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자.제조자 등이 가전제품 판매시 구매자가 요구하지 않을 경우의 그 포장재 회수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300	300	300
	<p>4.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15조제5항)</p> <p>가.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1)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100	300	300
	<p>(2)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50	100	300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3)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	100	300
	나.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0	300	300
	다.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 및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2)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300	300
	(3)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0	200	300
	(4)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	200	300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5)재활용품의 교환·판매매장의 설치·운영(영 제12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라.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때			
	(1) 식품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때	200	300	300
	(2)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0	100	300
	마.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영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등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	300	300
	5.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6조제2항)	50	70	100
	6.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34조제3항)	30	50	100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3. (생략) 14. &lt;신 설&gt;</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13 (현행과 같음) 14.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p>
<p>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생략) 제8조의2 &lt;신 설&gt;</p>	<p>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현행과 같음) 제8조의2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①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이하“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하고, 배출자가 운반할 수 있다. 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③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처리할 수 있으며, 자가운반하는 경우 배출자는 사전에 그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수료는 별표5와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4. &lt;신 설&gt;</p>	<p>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4. <u>건설폐기물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5의2와 같다.</u></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③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u>수수료는 월간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u>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할 수 있다.</p> <p>④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u>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u>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p> <p>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u>“별표7”</u>-----.</p>	<p>③ ----- ----- <u>수수료는 수거운반</u> ----- ----- -----.</p> <p>④ ----- <u>수수료는 별표5의3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u> ----- -----.</p> <p>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u>“별표7”</u>-----.</p>